

보건관계법령을 중심으로



정 연 강
(충양대 간호학과장)

1. 서 론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주변에서는 “대망의 80년대”라는 어휘가 맴돌기 시작했으며 어느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람이면 누구나 자신이 바라는 열원은 적은 것에서 부터 커다란 것 한가지씩은 갖고 있으며, 적은 희망으로나마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기를 바라게 됨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우리 간호계에 종사하는 전국의 간호요원도 개인의 목적달성에서부터 나아가서는 발전하는 경제사회속에서의 국민건강향상 및 유지에 자기가 맡은 임무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였을 때 국민각자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책임을 완수할 것인가에 몰두하게 되고, 성공적인 간호사업으로 이끌도록 노력하며 아울러 보람있는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게 될 것이다.

WHO에서는 건강이 단순한 질병이나 허약의 부재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인 안녕상태라고 정의하였듯이 건강이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이며 최고 수준의 건강상태에 도달하므로써 자신들이 소속되어 있는 위치에서 최선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되며 이는 국가발전에 큰 공헌을 하게되는 것이다. 국가의 경제, 사회 발전에 역군이 될 국민의 건강을 담당할 간호요원들의 역할 확대로 보다 발전할 수 있는 80년대의 간호사업 방향을 계획하며 수행할 수 있도록 간호사업을 담당할 간호원들의 활동면에서나 제도적인 면에서 보다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온갖 힘을 기울여야 할시점에서 현재의 의료법에 나타나 있는 간호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지역사회간호사업수행을 함에 따른 문제는 어떤 것인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1. 서 론
2. 국민보건현황
3. 현행 의료법
4. 결 론

2. 국민 보건 현황

오늘날 기본적 보건의료 문제는 세계적으로 선진국이나 후진국을 막론하고 사회정책의 주요 과제로써 깊은 관심과 노력이 경주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의료비 지출의 상승과 의료 기술의 진척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수준은 별로 향상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의료시설이 대도시에 편재되어 있으며 약 52%에 해당되는 농어촌 주민과 도시 영세민의 경우는 보건의료수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총인구는 3,640만명을 초과하고 있으며 이중 약 절반이 20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또한 전체 여성의 거의 70%가 넘는 인구가 40세 미만이고 이중 약 40%가 가입여성이라는 점으로써 모자보건 이외 학교보건, 기초지식이 부족한 농촌인구를 위한 보건의료, 인간의 기본적 건강요구의 충족과 질병 예방, 산업인구의 증가에 따른 산업보건, 노인 인구증가에 따른 노인보건 및 재활의학 등 포괄적인 보건의료사업이 요망되고 있다. 이러한 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의료전달체계를 개발하는 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이렇게 국민보건을 위하여 정부에서도 5차 5개년계획에 있어서는 국민의 기본권리를 중심으로 한 사업전개를 시책으로 보건사회부에서는 80년도 중요 사업을 다음과 같이 분타하였다. 즉, 보건분야, 사회분야, 환경분야로 구분하여 보건분야에서는 “건강한 국민 생활의 유대”란 기본목표로 국민의 의료기반의 확충, 질병관리의 강화, 보건저해요인 제거 등에 기반을 두었으며, 사회분야에 있어서는 “안정된 밝은 사회구성”을 기본 목표로 서민 생활 안정 대책의 강화, 의료보장제도의 정착, 사회복지 사업의 활성화, 가족계획 사업의 계속실시 등을, 환경분야에 있어서 “맑은 환경의 조성”이란 기본 목표

하에 종합적인 환경 보건체계의 확립, 오염방지 대책의 강력 추진 등을 시책으로써 구체적인 사업을 전개하리라 사료된다.

3. 현행 의료법

제1조 목적에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2조의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사회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 및 간호원을 말한다”로 되어 있다. 또한 의료인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한다. 의료요원 중 “조산원의 임무는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 종사함을 간호원은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로 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의료법을 토대로 국민의 건강유지 및 보호증진을 위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건강사업을 강조함은 간호관계법령 자체에서부터 문제를 안겨주고 있다고 사료되는 바이다. 왜냐하면 건강은 사회발전의 목표 및 수단의 하나인 바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보건의료체계의 기능인 것이다. 보건의료는 그 직접적 대상이 무엇이나에 따라서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즉,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진단, 치료, 교육, 재활과 자연환경을 대상으로 하여 사람의 건강에 이롭도록 개선하는 사업이 있는 것이다. 또한 건강은 보건의료를 통하여서만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일차적으로 목표가 건강이 아닌 식량증산, 도로건설, 통신망, 교육 등 많은 사회활동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건의료체계는 건강증진이라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보건의료 봉사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건강은 사회발전의 목표이자 수단의 하나로 파악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건강상태는 경제상태와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성쇠를 좌우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

이다. 이와 같이 국가발전이 국민건강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현대 사회가 산업화 되어감과 동시에 미태에 있어서 국제적인 산업 경쟁에 이겨나가기 위하여는 노동인구는 물론 쉰인구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향상을 위한 대책이 요망되고 있음을 재삼 논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여기에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함에 있어 간호원들의 역할을 잠깐 검토하여 보자. 간호사업은 좁은 범위의 지역사회 또는 넓은 의미의 국가인 한 나라 내에서 그 대상은 “인간”이라는 것을 공통점으로 포괄적 간호사업으로써의 전인간호에 전력을 기울리게 된다.

간호원이 자기에게 주어진 간호업무를 충분히 이행함에 있어 현행의료법상에 제시된 제 규정으로 인한 입무수행의 한계점에서 충분한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 이끌어 감도 현재간호사업 수행자는 똑같이 당당하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 예로써 학교보건사업수행자인 양호교사를 보더라도 학교보건법 시행령상 제 6조 양호교사를 두어야 하는 조항에 국민교, 중·고등학교에 각각 1인과 기술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및 각종학교에 1인을 둘 수 있게 되어 있으나 현재 학교보건을 수행하는 양호교사는 초·중·고에 있어서 도시의 경우 약 20% 정도가, 농어촌의 경우 약 80% 이상이 법적 정원에도 미치지 못하며 유치원이나 각종학교에는 전무한 상태에서 미래의 국가발전에 공헌할 학교인구에 대한 건강을 증진 보호하도록 되어 있음은 물론 업무수행에 따른 간호원의 처무규정(Standing Order) 같은 필요불가결한 법적 뒷받침의 결여로 오히려 간호사업 발전에 저해요인을 안고 있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은 앞에서 제시한 의료요원 중 간호원의 임무가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에 종사하는 데 국한시킨 것으로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4. 결 론

현대의학, 간호학의 발달과 더불어 인간이 갖는 문제중 기본원인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나 시책의 모체가 될 수 있는 의료법상의 문제점을 그 하나 하나 검토하여 나감은 적은 지면상으로 난제라 생각되기에 여기에 가장 기초적인 제 1조에서 목적을 증명으로 예를 들었다.

간호사업의 시작과 더불어 오늘날까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논란도 다각도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를 위하여 여러 각도에서 많은 연구를 하여 온 것도 주지의 사실이나 이러한 모든 것이 헛된 꿈인 것처럼 누적되어 오는 문제점은 아직도 계속 존재하고 있다. 즉, 간호행정 체계의 이원화, 처우개선과 근무환경, 정부 보건정책수립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많은 간호요원을 참여시키지 않는 점, 나아가서는 사회원칙과 더불어 간호원의 역할 확대에 따른 법적인 뒷받침의 결여 동등 이라고 볼 수 있으며 “여자”라는 대명사 앞에 근무환경 및 위외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지연시키고 있다.

국민의 건강증진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므로써 국가발전에 기여코자 간호요원의 임무를 수행에 근본자원이 되는 지역사회 보건간호원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의료법내에 간호법을 제정코자 하였으나 실현가능성은 요원한 것으로 생각케 한다.

이상과 같이 개선되고 지향되어야 할 문제가 아직도 많이 산재되어 있음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규정이기에 검토할 수 있고 수정가능한 것이기에 대망의 80년대에는 간호사업을 통한 보건 의료사업으로 근대사회에 맞는 간호원의 역할확대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간호원을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국민건강을 담당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간호관계 법령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다듬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기대하여 본다. ■